

## “공정”을 망각한 농식품부, 최소한의 선의는 없는가!

금번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던진 화두가 “공정”이다. 채이배 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어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간이 중심이 되고 국가는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유업체 중심의 불공정한 원유시장에 대한 개혁보다는 시장에서의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있다.

금번 정부안 중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조건 삭제, 원유가격협상위원회 설치 삭제는 유일한 낙농가의 거래교섭권을 완전 제거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집유일원화 실패로 인해 낙농진흥회는 기능을 완전 상실했다. 유업체는 진흥회출범(’99년) 이전과 같이 낙농가의 원유를 직접 집유하고 농가쿼터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원유의 과부족시 유통질서는 문란해지고 전체로서도 수급조절이 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낙농가는 생산자우권이 박탈된 상황으로 시장원리의 전제조건인 유업체와의 교섭권은 전혀 없다. 우유평가수정으로 인해 선진국 낙농제도의 핵심은 생산자와 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낙농진흥회의 대체재(代替財)로 생산자들이 제시한 것이 바로 한국형 MMB설치에 따른 전국쿼터제다. 전국쿼터제를 도입하지 않고 용도별차등가격제를 하겠다는 것은 실행방안이 없는 허구이다. 정부안은 원유시장에서 유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지나지 않는다.

낙농진흥법이 개정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시장에서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협 중앙회 등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된 민간(낙농진흥회)이 수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시 원유 유통질서 유지 및 공정성 유지에 관한 명령을 시장에 내릴 수 있도록 ‘심판자’로서의 역할도 명기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농식품부 독단으로 이사회를 개편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낙농진흥법 어디에도 없다.

낙농제도 정부안은 전체를 보지 못한 채 코끼리 몸의 일부분만을 만져보고는, 또는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떼어서는 ‘이것만이 코끼리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에 의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준수해야 그에 따른 강제력 행사도 용인될 수 있다. 정부안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합법성과 함께 정책대상자인 낙농가의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WTO체제에 맞게 낙농산업 발전과 낙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현행 낙농진흥법의 목적이자 정신이다(1997년 국회 농해수위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인용). 김현수장관과 당국자들의 오만과 독선이 낙농산업을 망치고 있다.

2022. 1. 5(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전화 : 02-588-7055 / 팩스 : 02-584-5144

홈페이지 : [www.naknong.or.kr](http://www.naknong.or.kr)